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358호 정선군의회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정선군 조례 제2359호 정선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정선군 조례 제2360호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6
- 정선군 조례 제2361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 정선군 조례 제2362호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 정선군 조례 제2363호 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18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222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25

조 례

정선군의회의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의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3년 12월 11일

정선군 조례 제2358호

정선군의회의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의회의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 정선군의회의포상조례”를 “정선군의회 포상조례”로 한다.

제8조(포상) 제목을 “(포상)”에서 “(포상권자)”로 한다

제9조 “심사”를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정선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사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3인이상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의회 공무원 중 사무과장이 추천하는 자를 의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정선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두어 포상절차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정선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주 요 내 용

- 제명을 “정선군의회포상조례”에서 “정선군의회 포상조례”로 변경
- 정선군의회 포상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 설치(제9조 및 제9조의2)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3년 12월 11일

정선군 조례 제2359호

정선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조례”를 “정선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의회기의 모형, 색상, 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1. 깃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議”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정선군의회” 자를 표시한다.
2. 깃면은 군청색으로 하고, 무궁화 도형과 “議”자 및 “정선군의회” 자는 금색으로 하며,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한다.
4. 의회기의 모형과 규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의회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에 관해서는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7조를 준용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의회기는 의회청사, 본회의장 및 의장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의회기 모형도 및 규격(제2조 관련)

모 형 도	규 격
가 로 세 로	○ 가로 : 세로 = 3 : 2 ○ 무궁화 도형의 직경 : 세로의 3/5 ○ 무궁화 도형의 가운데 원의 직경 : 무궁화도형 직경의 1/1.9 ○ “義”자의 크기 : 원 직경의 0.8/1 ○ 정선군의회 각 자의 크기 : 세로의 1/10 ○ “정선군의회”자 전체의 폭 : 가로의 1/2

개 정 이 유

- 현재 사용중인 의회기 깃면크기 표준규격을 대한민국국기법에서 규정한 깃면크기 표준규격을 준용하고 한문으로 사용중인 “旌善郡議會”를 한글표기로 변경

주 요 내 용

- 제명을 “정선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조례”에서 “정선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
- 현재 사용중인 의회기 깃면크기 표준규격을 대한민국국기법에서 규정한 깃면크기 표준규격을 준용
- 한문으로 사용중인 의회기의 “旌善郡議會”를 한글표기로 변경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3년 12월 11일

정선군 조례 제2360호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정선군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로 본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된다.
- ② 당연직위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강원도교육청 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 해촉)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수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사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정 이 유

-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선군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정선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 통합 운영(제2조)
 - 시행계획 수립, 보호조치, 친권, 후견인, 아동학대 예방, 아동지원 등
-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제3조)
 - 위원장 정선군수, 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관련분야 전문가 등 위촉
- 위촉위원 임기(2년) 및 위원 해촉, 위원장 등 직무 규정(제4조부터 제6조)
- 위원회 운영(회의, 의결, 간사 등) 및 의견청취 규정(제7조에서 제10조)
- 회의록, 비밀누설 금지, 수당 등 지급 근거 규정(제11조부터 제12조)
- 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위임(제13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3년 12월 11일

정선군 조례 제2361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부터 3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	일 반 직	정무직
비 율	<u>99%이상</u>	<u>1% 이내</u>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비 율	1% 이내	<u>5% 이내</u>	<u>23% 이내</u>	<u>31% 이내</u>	<u>23% 이내</u>	<u>16% 이상</u>	<u>1%이내</u>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0% 이내	90% 이상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구 분	총 계	의 회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572	-				
정무직 계	1	-				
일반직 계	<u>547</u>	-				
3급	-					
4급	3		3			
5급	<u>25</u>	2	<u>11</u>	2	1	9
6급이하 계	<u>518</u>	-				
전문경력관 계	<u>1</u>	-				
연구직 계	4	-				
연구관	0	-				
연구사	4	-				
지도직 계	20	-				
지도관	2			2		
지도사	18	-				

개 정 이 유

- 공직사회 통합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 구분 체계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4개의 업무성격 중심으로 구분 체계를 단순화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정원의 총수 : 572명
 - 집행기관 : 561명(현행과 같음)
 - 의 회 : 11명(현행과 같음)
-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별표 1)
 - 일반직 : 99%이상
 - 정무직 : 1%이내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별표 2)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비 율	1% 이내	5%이내	23%이내	31%이내	23%이내	16%이상	1%이내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별표 3)
 - 정무직 : 1명(현행과 같음)
 - 4급 : 3명(현행과 같음)
 - 5급 : 25명(현행과 같음)
 - 6급이하 : 430명 ⇨ 518명(증 88명)
 - 별정직 : 2명 ⇨ 0명(감 2명)
 - 전문경력관 : 0명 ⇨ 1명(증 1명)
 - 연구·지도직 : 24명(현행과 같음)
 - 기능직 : 87명 ⇨ 0명(감 87명)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3년 12월 11일

정선군 조례 제2362호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를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을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를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관내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관내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정선군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⑥ 회장이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날짜·시간·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군수는 위원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 및 제1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이하"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의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군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제14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군내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말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한다.
2.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의 영업시간 제한과 제1항제2호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등은 직전 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도마다 국세청에서 발행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을 말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개설등록”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으로, “역사”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전통상가”를 “전통상점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요건 강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 등에 대하여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 및 종사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도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근거 마련(안 제8조)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법적근거 신설에 따라 기존 협의회의 구성·운영관련 조항을 신설된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개정
 - 대규모 점포등 개설등록 요건강화(안 제14조)
 - 대규모 점포등을 개설 또는 변경등록의 경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첨부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안 제14조의2)
 - 쇼핑몰 등 입점한 대형마트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안 제14조의2)
 - 농수산물 매출비중 51% 초과시 ⇒ (개정) 55%로 상향
 - 영업시간 제한 : (현행) 0시~8시 ⇒ (개정) 0시~10시
 - 의무휴업일 : (현행) 매월2일(둘째, 넷째 일요일) ⇒ (개정) 매월 이틀 공휴일
- * 단, 이해당사자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3년 12월 11일

정선군 조례 제2363호

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정선군재난안전대책 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재난관련기관”이라 한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예상지역을 말한다.
2.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련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지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재난관련기관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4. “통합지휘소의 장”이란 재난현장에 설치·운영되는 통합지휘소를 지휘하는 정선군 부단체장을 말한다.
5.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이하“통합지휘소”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6.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련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7. “초기대응담당자”란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초동대처 등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8. “재난안전통신망”이란 기본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확보한 현장지휘통신체계 중에서 재난관련기관이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정선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관련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련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련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련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련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제2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

제4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시,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 할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사망신고 3명 이상, 부상자 20명 이상의 재난
2. 30ha 이상 대형산불, 지진
3.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폭발사고
5. 주요하천에서의 유류·유해물질 유출 및 살포 사고
6.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7.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③ 대책본부장은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될 경우에는 재난현장 통합대응 및 재난관련기관 간 공조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① 기본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련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련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재난관련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자원의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기타 재난현장에 대한 각종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 등

③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련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④ 통합지휘소의 장은 제3항에 의한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통합지휘소의 장은 통합지휘소와 재난관련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장책임자에게 통합지휘소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지휘관 지정) 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 재난관련부서의 장
2.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부서의 장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8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 지휘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재난관련기관에 통합지휘소의 위치, 통합지휘소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되는 통합지휘소를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현장지휘관은 재난안전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련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기본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지역 주민대피) 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재난현장 출동

제11조(재난현장 출동 준비) 재난관련기관의 장은 기본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 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출동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재난현장 출동 통보) 재난관련기관의 장은 제11조 규정에 따라 확보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출동시키고, 현장지휘관에게 출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① 현장지휘관은 제12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련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련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제14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련기관에 대해서는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재난현장 출동지원) ① 재난관련기관의 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련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 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교통통제 등을 실시하고, 그 조치결과를 출동 중인 재난관련기관의 현장책임자와 현장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재난현장 조치

제16조(통합지휘소의 위치) ① 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련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휘소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② 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휘소의 위치 등을 재난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련기관의 현장책임자는 기본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현장지휘관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현장지휘관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기본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련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지휘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현장 통제) ① 현장지휘관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련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현장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현장지휘관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부족에 따른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된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절 재난현장 긴급복구

제21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현장지휘관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2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① 현장지휘관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련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3조(재난안전통신망 긴급복구) ① 현장지휘관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안전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제단장(관할지역 소방서장)에게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요청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제24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 대응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현장지휘관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 업무 수행 결과 등을 기본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통합지휘소 철수) 현장지휘관은 복구전담조직이 재난현장에 도착하면 긴급 복구 상황 등을 인수·인계한 후, 통합지휘소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 정 이 유

-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선군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통합지휘소 구성 및 운영, 임무에 대하여 규정(제4조~ 제7조)
- 재난 현장 상황전파 절차를 규정(제8조~제10조)
- 재난 현장 출동 관련 절차를 규정(제11조~제15조)
- 재난 현장 조치 관련 사항을 규정(제16조~제20조)
- 재난 현장 긴급 복구 관련 사항을 규정(제21조~제23조)

규 칙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3년 12월 11일

정선군 규칙 제1222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를 “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로 한다.

제2조 중 “정원은”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직무군 포함)은”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선군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총 계		572	275	11	86	20	89	91
정무직 계		1	1					
	군수	1	1					
일반직 계		547	269	11	67	20	89	91
I	4급 소계	1	1	0	0	0	0	0
	서기관	1	1					
	4~5급 소계	3	2	0	1	0	0	0
	서기관	1	1					
	서기관,기술서기관	1	1					
	행정,시설							
	의무·보건·간호	1			1			
	5급 소계	24	11	2	1	1	4	5
	행정	5	4	1				
	농업	0						
	의무	0			0			
	시설	0	0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시설	3	3					
	행정·별정	1		1				
	행정·농업	1	1					
	행정·농업·시설	9					4	5
	행정·환경	1	1					
	행정·녹지	1	1					
	행정·환경·시설	1				1		
	보건·의무·의료기술	1			1			
	6급 소계	125	71	3	9	5	17	20
	행정	49	28	3		1	7	10
	세무	3	3					
	전산	1	1					
	농업	3	3					
	녹지	2	2					
	보건	0			0			
	시설	9	9			0		
	행정·세무	3	2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전산	0	0					
	행정·농업	8	2				1	5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행정·녹지	2	2					
	행정·공업	3	2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3	3					
	행정·시설	4	4					
	전산·방송통신	0	0					
	농업·수의	1	1					
	농업·시설	5	1				4	
	행정·지도사	0			0			
	농업·지도사	0			0			
	보건·간호	1			1			
	환경·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4					4	
	행정·환경·공업	1				1		
	행정·환경·보건	1	1					
	행정·농업·시설	5						5
	행정·방송통신·전산	1	1					
	보건·간호·의기	3			3			
	보건진료	3			3			
	운전·기계운영	3	2			1		
	사무운영·시설관리	1	1					
7급 소계		165	89	1	23	7	22	23
	행정	47	27	1		0	7	12
	세무	7	6					1
	사회복지	7	3				3	1
	전산	1	1					
	공업	1	1			0		
	농업	3	3		0			
	녹지	2	2					
	보건	8			8			
	의료기술	3			3			
	간호	4			4			
	환경	3	1			2		
	시설	22	15			1	2	4
	방송통신	0	0					
	행정·세무	4	1				3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공업	3	3					
	행정·농업	9	1		0		3	5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5	4			1		
	행정·시설	6	5				1	
	전산·방송통신	1				1		
	농업·수의	1	1		0			
	의료기술·간호	1			1			
	보건·간호	1			1			
	보건진료	4			4			
	토목운영	2	2					
	통신운영	2	2					
	기계운영	2					2	
	운전	4	3		1			
	사무운영	3	1			1	1	
	시설관리	1	1			0	0	
	운전·기계운영	2	2					
	통신운영·전기운영	1				1		
	사무운영·시설관리	1	1					
8급 소계		122	52	1	22	6	23	18
	행정	30	15			1	6	8
	세무	1	1					
	사회복지	3					2	1
	전산	2	2					
	공업	2	1			1		
	농업	4	1				2	1
	녹지	3	3					
	보건	0			0			
	의료기술	4			4			
	간호	1			1			
	환경	1	0			1		
	시설	13	6			1	4	2
	방송통신	1	1					
	행정·세무	6	1				4	1
	행정·사회복지	3	3					0
	행정·전산	3	3					
	행정·공업	4	4					
	행정·농업	2	1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1	0			1		
	행정·시설	7	3			0		4
	공업·시설	1	1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6	0		6			
	간호·의기	1			1			
	환경·녹지	1	1					
	행정·사회복지·전산	1	1					
	보건·간호·의기	3			3			
	보건진료	4			4			
	토목운영	1	1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	1					
	운전	4					4	
	사무운영	3	2				1	
	시설관리	1		1				
	9급 소계	106	43	4	10	1	23	25
I	행정	12	5				4	3
	세무	3						3
	사회복지	13	4				4	5
	사서	1	1					
	공업	3	2			1		
	농업	5	2				2	1
	녹지	1	1					
	환경	2	2					
	보건	5			5			
	의료기술	0			0			
	시설	3	2				1	
	행정·시설	1	1			0		
	전산·방송통신	2	2					
	시설·전산	1	1					
	토목운영	3	3					
	전화상담운영	1	1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4						
	열 관리운영	1	1					
	운전	18	4					
	사무운영	16	6					
	시설관리	8	2					
	통신운영·전기운영	1	1					
	전문경력관 소계	1	0	0	1	0	0	0
	전문경력관 나군	1	0	0	1	0	0	0
	농기계 교관	1			1			

연구직 계			4	2	0	2	0	0	0
I	연구사 소계		4	2	0	2			
	I	학예연구사	1	1					
		기록연구사	1	1					
		농업연구사	2			2			
지도직 계			20	3	0	17			
II	지도관 소계		2	0	0	2	0	0	0
	II	농촌지도관	2			2			
		지도사 소계		18	3	0	15		
	II	농촌지도사	17	3		14			
		농촌지도사·농업연구사		1			1		

개 정 이 유

-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의 직렬을 폐지하고,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정원의 총수 : 572명(현행과 같음)
-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 현행과 같음
- 본청 275명, 의회 11명, 직속기관 86명, 사업소 20명, 읍·면180명
- 직렬별 정원조정(별표)
- 일반직 전환대상 인원 : 88명(별정직 1명, 기능직87명)
 - 별정7급(1명) ⇨ 전문경력관(1명)
 - 기능직(87명) ⇨ 일반직(87명)
 - 기능직·별정직 직급별 현황

구 분	별정직	기 능 직			
직급별	7급	6급	7급	8급	9급
인원(명)	1명	4	18	11	54
전환인원(명)	1명	4	18	11	54

⇨ 2013.12.12. 일반직으로 전환